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78호

2018. 8. 16. (목)

함께
서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83호

보호수 지정해제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이 상실된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 하고자, 산림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수목내역

구분	지정번호	위 치	수 종	주수	수령(년)	규 격		토지 소유자	비고
						수고(m)	흉고둘레(m)		
지정해제	서9-3	강북구 수유동 642-2	느티나무	1	415	20	3.68	화계사	
지정해제	서13-5	서대문구 봉원동 산2-1	느티나무	1	150	23	1.1	봉원사	

2. 지정해제 사유

- 서 9-3 느티나무 : 수세쇠약으로 고사되어 생리적으로 회복 가능성 없음
- 서13-5 느티나무 : 생육공간 협소로 가지의 10%정도만 살아있으며 수관이 주택가로 기울어져 안전사고 우려, 보호수의 가치 상실

3. 지정해제 예정일 : 2018. 9. 1.

4.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보호수 지정해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 보호수 총괄 문의 : 서울특별시 조경과(☎ 02-2133-2124)
- 서9-3 느티나무 보호수 문의 : 강북구 푸른도시과(☎ 02-901-6935)
- 서13-5 느티나무 보호수 문의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02-330-1787)